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개정된 철도안전법(‘23. 4. 18.공포)에서 위임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 과태료 및 철도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

2. 주요내용

철도안전법 개정(법률 제00000호, 2023. 4. 18. 공포, 2023. 7. 19., 2024. 07. 19. 시행)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2호 폐목부터 구목을 각각 도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, 별표 6 제2호에 폐목부터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폐. 법 제40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제4항 제1호	30	60	90
허. 법 제44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,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(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)	법 제82조제2항 제7호의2	150	300	450
고.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	법 제82조제2항 제7호의3	150	300	450
노. 법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	법 제82조제2항 제7호의4	150	300	450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 제2호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6] 과태료 부과기준 (제64조 관련) 1. (생략) 2. 개별기준					[별표 6] 과태료 부과기준 (제64조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				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	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~ 터. (생략)		(생략)			가. ~ 터. (현행과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<신설>—					퍼. 법 제40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 2 조 제 4 항 제 1 호	30	60	90
<신설>					허. 법 제44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의 방법, 절차 등 을 따르지 아니 하고 위험물취급 을 한 자(위험물 을 철도로 운송 한 자는 제외한 다)	법 제8 2 조 제 2 항 제 7 호의 2	150	300	450
<신설>					고. 법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검 사를 받지 아니 하고 포장 및 용 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	법 제8 2 조 제 2 항 제 7 호의 3	150	300	450
<신설>					노. 법 제44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 험물취급자	법 제8 2 조 제 2 항 제 7 호의 4	150	300	450
퍼. 법 제4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조 치명령을 따르지	법 제8 2 조 제 5 항 제	15	30	45	도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	--	--	--

않은 경우	1호					-----				
허. 법 제4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8호	150	300	450		로. -----	-----	--	--	--
고. 법 제47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	법 제82조제4항제1호	30	60	90		모. -----	-----	--	--	--
노. 법 제47조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5항제2호	15	30	45		보. -----	-----	--	--	--
도.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8호의2	150	300	450		소. -----	-----	--	--	--
로.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(선로는 제외한다)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9호	150	300	450		오. -----	-----	--	--	--
모.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	법 제82조제4항제2호	30	60	90		조. -----	-----	--	--	--
보. 법 제48조제7호·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10호	150	300	450		초. -----	-----	--	--	--
소.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	법 제82조제1항제13호의2	300	600	900		코. -----	-----	--	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603